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지방채(이하 "지방채"라 한다)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지방채의 발행·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제5조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중 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.

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중 "공영개발사업"을 각각 "토지 및 주택개발사업"으로 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융자약정 및 융자절차)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(이하 "융자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
 -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10조의3(융자금의 원리금상환)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 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-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